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519
----------	-------

발의연월일 : 2025. 10. 10.

발 의 자 : 박정훈 · 진종오 · 김 건
고동진 · 유용원 · 우재준
한지아 · 안상훈 · 김소희
박정하 · 배현진 · 김성원
정성국 의원(13인)

제안이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음식 등 배달 서비스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플랫폼사업자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 각종 비용을 부과하며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음.

특히 배달의민족, 쿠팡 등 대기업 플랫폼사업자가 수수료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에 이중으로 전가하거나, 광고비 부과 내역을 불투명하게 운영함으로써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한편, 2024년 기준 배달의민족의 매출액은 4조 3,226억 원, 영업이익 6,408억 원으로, 영업이익률이 약 1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시장지배적지위에 해당하는 배달플랫폼사업자에 대하여, 입점업체에 대한 수수료 총액 상한을 설정하고, 입점업체에 수수료 및 광고비 등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수수료 인상분을 소비

자 가격에 이중으로 전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해당 행위의 위반 시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래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배달플랫폼, 배달플랫폼사업자, 입점업체의 정의를 신설하고,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대기업에
해당하는 배달플랫폼사업자를 적용 대상으로 함(안 제2조).
- 나. 배달플랫폼사업자가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배달비·중개수수료·결
제수수료·광고비 등의 합계가 해당 주문에 따른 매출액의 15퍼센
트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수수료 또는 광고비의 부담 전가 및
수수료 인상분의 소비자 가격 이중 전가를 금지함(안 제5조제2항
신설).
- 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플랫폼사업자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가격
인하, 행위 중지, 시정명령 공표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
- 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플랫폼사업자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매출액
의 6% 이내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배달플랫폼”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식품 주문 및 배달 등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을 말한다.

1의3. “배달플랫폼사업자”란 배달플랫폼을 운영하는 자로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대기업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의4. “입점업체”란 배달플랫폼을 통하여 음식·재화 또는 용역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등록한 사업자를 말한다.

제5조의 제목 중 “시장지배적지위”를 “시장지배적지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남용행위”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남용행위”를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남용행위”라 한다)”로 한다.

② 배달플랫폼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배달비·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의 합계가 해당 주문에 따른 매출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행위
2. 수수료 또는 광고비를 입점업체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3. 수수료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에 전가하는 행위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중 “시장지배적사업자”를 각각 “시장지배적사업자 또는 배달플랫폼사업자”로 한다.

제8조 본문 중 “시장지배적사업자”를 “시장지배적사업자 또는 배달플랫폼사업자”로 한다.

제55조제1호 중 “시장지배적지위”를 “시장지배적지위 등”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 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u><신 설></u>	<u>1의2. “배달플랫폼”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식품 주문 및 배달 등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을 말한다.</u>
<u><신 설></u>	<u>1의3. “배달플랫폼사업자”란 배달플랫폼을 운영하는 자로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대기업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u>
<u><신 설></u>	<u>1의4. “입점업체”란 배달플랫폼을 통하여 음식·재화 또는 용역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등록한 사업자를 말한다.</u>
2. ~ 20. (생 략)	2. ~ 20. (현행과 같음)
제5조(<u>시장지배적지위</u> 의 남용금지)	제5조(<u>시장지배적지위</u> 등의 남용금지)
① 시장지배적사업자는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남용행위”라 한다)</u>	① -----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u>

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 5. (생략)

<신설>

② 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용행위가 있을 때에는 그 시장지배적사업자에게 가격의 인하, 해당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1. ~ 5. (현행과 같음)

② 배달플랫폼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배달비
· 중개수수료 · 결제수수료 ·
광고비 등의 합계가 해당 주
문에 따른 매출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행위

2. 수수료 또는 광고비를 입점
업체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3. 수수료 인상분을 소비자 가
격에 전가하는 행위

③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
하 “남용행위”라 한다)의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7조(시정조치) ① -----

--시장지배적사업자 또는 배달
플랫폼사업자-----

명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용행위를 한 회사인 시장지배적사업자가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해당 회사가 한 남용행위를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회사가 한 행위로 보아 제1항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용행위를 한 회사인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된 경우에는 분할되는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의 남용행위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행위로 보고 제1항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 3. (생략)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용행위를 한 회사인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기존 회사 또는 새로운 회사 중 어느 하나의 행위로

-----.

② -----
----- 시장지배적사업자 또는 배달플랫폼사업자-----

-----.

③ -----
----- 시장지배적사업자 또는 배달플랫폼사업자-----
-----시장지배적사업자 또는 배달플랫폼사업자-----

-----.

1. ~ 3. (현행과 같음)

④ -----
----- 시장지배적사업자 또는 배달플랫폼사업자-----

보고 제1항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 -----.
제8조(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u>시장지배적사업자가</u> 남용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6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이하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이라 한다)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8조(과징금) ----- <u>시장지배적사업자 또는 배달플랫폼사업자가</u>----- ----- ----- ----- ----- -----. ----- ----- ----- ----- -----.
제55조(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사무) (생략) 1. <u>시장지배적지위의</u> 남용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2. ~ 6. (생략)	제55조(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사무) (현행과 같음) 1. <u>시장지배적지위 등</u>----- ----- 2. ~ 6. (현행과 같음)